

청주교육대학교 교육실습지원 및 부설학교협력센터 규정

제정 2006. 3. 17 규칙 제1152호

개정 2020. 8. 12. 규칙 제1544호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학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실습지원 및 부설학교협력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8.12.>

제 2 조 (조직)①센터에는 전담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8.12.>

②센터에는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교무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0.8.12.>

제 3 조 (기능) 교육실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교육실습 프로그램 연구 · 개발
2. 교육실습 운영 · 평가
3. 부설학교와의 협력 관련 제반사항 <개정 2020.8.12.>
4. 기타 교육실습 지원에 관한 사항

제 4 조 (위원회) 교육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· 운영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 5 조 (위원회 구성)① 위원회는 전담교수 및 전임교원과 1인 이상의 부설학교 교원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은 전담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교무처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0.8.12.>

② 전담교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.

③ 간사는 교무처 실습담당자로 하며 회의록 작성 · 행정사항 집행 · 회의 내용 보고 등을 한다. <개정 2020.8.12.>

제 6 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실습 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육실습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3. 교육실습 연구에 관한 사항
4. 부설학교 협력 관련 제반사항 <개정 2020.8.12.>
5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7 조 (회의)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규정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8. 12. 규칙 제1544호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